

플러스 퇴직연금 든든한미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변경사항

1. 펀드명 : 플러스 퇴직연금 든든한미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정정사유

1) 규약

①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투자설명서

①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 반영 등) – 해당사항없음

④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3) 간이투자설명서

① 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3. 변경내용

<규약>

항목	정정전	정정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p>1.(기재생략)</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기사채 등 (취득 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10.(기재생략)</p> <p>②(기재생략)</p>	<p>1.(현행과 동일)</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취득 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10.(현행과 동일)</p> <p>②(현행과 동일)</p>
		<p>부칙</p> <p>(변경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현황 업데이트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최근현황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최근현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최근현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설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사항 추가	추가	2021.08.31 ①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③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 반영 등) - 해당사항없음 ④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대상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 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 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	가. 투자대상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 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 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기사채등 (취득 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취득 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최근현황 업데이트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최근 3년 변동성: 4.43%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최근 3년 변동성: 6.1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 업데이트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가. 요약재무정보 최근현황 업데이트 나. 대차대조표 최근현황 업데이트

			다. 손익계산서 최근현황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근현황 업데이트	-	최근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최근현황 업데이트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최근현황 업데이트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최근현황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가. 회사개요 최근현황 업데이트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현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현황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최근현황 업데이트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최근현황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현황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현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 업데이트